

# 목 차

<input type="checkbox"/>	일반사항	-----	1
<input type="checkbox"/>	시상	-----	2
<input type="checkbox"/>	참가요령	-----	3
	1. 경기방법	-----	3
	2. 심판 및 경기규칙	-----	3
	3. 채점방법	-----	3
	4. 참가자격	-----	3
	5. 참가신청	-----	5
	6. 사전열람	-----	6
	7. 시·군 대표자회의	-----	6
<input type="checkbox"/>	참가요령 변경사항	-----	7
<input type="checkbox"/>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	9
	1. 육상	-----	10
	2. 수영	-----	11
	3. 축구	-----	12
	4. 야구	-----	13
	5. 배드민턴	-----	14
	6. 탁구	-----	15
	7. 복싱	-----	16
	8. 유도	-----	17
	9. 씨름	-----	19
	10. 씨유도	-----	20
	11. 유감도	-----	21
	12. 검도	-----	22
	13. 궁도	-----	23
	14. 배드민턴	-----	24
	15. 태권도	-----	25
	16. 볼링	-----	26
	17. 보디빌딩	-----	27
	18. 게이트볼	-----	28
	19. 족구	-----	29
	20. 크라운드폴프	-----	30
	21. 댄스스포츠	-----	31
	22. 산악(등산)	-----	35
	23. 승마	-----	37
	24. 에어로빅스체조	-----	41
	25. 합기도	-----	43
<input type="checkbox"/>	도민체육대회 관련 규정	-----	45
	1. 도민체육대회 규정	-----	46
	2. 도민체육대회 경기 운영 내규	-----	55
	3. 도민체육대회 채점 내규	-----	60
	4. 도민체육대회 특별상 내규	-----	64



#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참가요강

## 일반사항

1. 대회명칭 :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2. 대회기간 : 2018년 9월 13일(목) ~ 9월 16일(일) <4일간>
3. 개최지 : 태안군
4. 주최 : 충청남도체육회
5. 주관 : 태안군, 태안군체육회
6. 후원 : 충청남도교육청,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K B S , M B C , T J B
7. 경기종목 : 25종목(정식 19종목, 전시 6종목)

정식 19종목	전시 6종목
점도,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초등부 시범종목)	그라운드골프, 댄스스포츠, 등산, 승마, 에어로빅스체조, 합기도

8. 종별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

## 시 상

### ○ 종합시상

1위 : 우승기, 도지사배, 상장

2위 : 준우승기, 도지사배, 상장

3위 : 3위기, 도지사배, 상장

### ○ 특별상시상

성취상 : 1위, 2위, 3위(도지사배, 상장)

모범선수단상 : 도지사배, 상장

### ○ 종목별 종합시상

1위, 2위, 3위 : 도지사배, 상장

장려상, 화합상, 건강상(전시종목) : 트로피

### ○ 개인별, 단체별시상

1위 : 금메달, 상장

2위 : 은메달, 상장

3위 : 동메달, 상장

## 참가요령

### 1. 경기방법

가. 시·군 대항전으로 실시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토너먼트방식으로 하되 동위자 순위전(3,4위전 또는 5,6,7,8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동순위 처리)

2)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단체경기종목, 개인경기단체종목 및 개인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 시·군 팀에 배정한다.

다. 승부는 경기종목별 대회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타 경기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대회본부에서 결정한다.

###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 심판은 해당 종목별 회원단체의 공인심판이 담당한다.

나. 경기규칙은 해당종목별 회원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경기운영은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에 의한다.

### 3. 채점방법

가. 채점은 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한다.

나. 본 대회에서 다음 종목은 시범종목 및 전시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 시범종목 : 테니스(초등부)

- 전시종목 : 그라운드골프, 댄스스포츠, 등산, 승마, 에어로빅스체조, 합기도

### 4. 참가자격

가.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종목별 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을 필한 임원, 선수에 한함.

나. 시·군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자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 경기부문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선을 거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 체육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2중으로 예선대회에 참여한 자는 대회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예선대회에서 탈락되어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군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다. 일반부 선수는 2016.12.31.이전부터 대회개최 당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관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 단, 일반부는 만 25세 이상인자만 참가할 수 있다(보디빌딩, 게이트볼 제외).

- 1) 전시종목은 2018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해당 시·군에 전입된 자로서 시·군 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은 팀, 또는 개인만 참가할 수 있다.
  - 2) 공무원은 도내에 2016.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재지 시·군으로도 출전할 수 있다.
  - 3) 전년도 도민체전 참가선수가 해당중앙종목단체에 등록하였거나, 당해 연도 해당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궁도, 볼링, 보디빌딩 종목은 선발로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참가가 가능하다. 단, 국제대회 참가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선발로 구성되어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전국체전 대표선수는 제외되나 학생선수는 예외)
  - 4) 실업팀 소속이라 하더라도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도내 선수들로 선발전을 통하여 구성한 실업팀에 대하여는 출생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궁도에 한함)
  - 5)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은 출전할 수 없다.  
다만,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참가할 수 있으며, 2017.12.31.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
- 라. 학생부 선수는 도내 학교 소재지 시·군으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 1) 고등부 선수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 2) 중학교 선수는 도내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초등학교 출신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 마. 체육특기자로서 최초 선수등록한 시·군에서 타시·군으로 전학한 자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바. 학생부 선수는 당해연도 1학기 개학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체육특기자는 “마”항적용)
- 사. 체육특기자로서 최초 선수등록한 타 시·도에서 도 관내 시·군으로 전학 및 진학한 자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군에 전학한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합병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진학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관내 시·군으로 진학한 경우
  - 3)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 해당 지역에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 4)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5) 단체경기종목(예 : 축구, 야구, 배구) 중 해당 시·군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 팀을 창단 할 경우 타 시·군 선수의 전·입학 선수가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6) 체육 특기자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7)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 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전·후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자. 동일인이 1개 경기부문 이외의 타 경기부문에 참가할 수 없다.
- 차. 연령별 참가종목에 대하여는 참가신청서 양식대로 참가신청을 하고 해당 연령선수가 없을 경우 아래연령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아래 연령자는 위 연령자로 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 카. 본 대회 해당종목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심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1) 일반부 선수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  
다만, 신분증 분실자는 국가에서 인정한 임시 주민등록증도 인정한다.
  - 2) 학생부는 사진이 부착된 재학증명서를 대회전 종목별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참가신청 제출 시)
- 타.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참가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선수의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시·군은 차기 대회 당해 세부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 5. 참가신청

- 가. 신청마감(전산화) : 2018년 6월 11일(월) 10:00 ~ 7월 16일(월) 18:00까지  
※ 전산입력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나. 신청장소 : 충청남도체육회 경기운영팀(☎ 041-635-0127)
- 다. 참가신청 : 각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 라. 신청방법 : 시·군 책임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 마. 구비서류
- 1) 참가신청서 2부(본회 전산화양식) 제출
    - 1부는 충청남도체육회, 1부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 2) 종목별 선수등록부 2부(사진 부착분, 본회 전산화양식) 제출
    - 1부는 충청남도체육회, 1부는 회원종목단체
    - ※ 학생부는 생활기록부나 재학증명서 제출 ⇒ 도체육회에 제출  
(재학증명서는 도체육회 양식 및 각 학교 양식 제출이 가능하나 선수의 생년월일 및 재적 년, 월, 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 제출)
  - 3) 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일반부 선수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는 작성 후 시·군 체육회 에서 관리
  - 5) 참가신청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해당선수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학생부 선수는 재학증명서 1부, 중학교 출신지로 참가하는 자는 졸업증명서 1부 추가
    - 일반부 선수는 직장 소재지(공무원)로 참가하는 자는 재직증명서 1부 추가
- 바. 일단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 6. 사전열람

- 가. 열람기간 : 2018년 7월 23일(월) ~ 8월 2일(목) 15:00까지 <11일간>
- 나. 장 소 : 충청남도체육회 경기운영팀(충남체육회 홈페이지 내)
- 다. 조 치
  - 1) 시·군별 책임자가 해당종목의 참가신청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회는 이를 조사·처리하되 열람기간 경과후의 이의신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이의신청 후 이의제기 된 내용에 대한 정정요구 및 취소는 불가함.
- 라. 열람확인서 제출 : 2018년 8월 7일(화) 15:00, 충청남도체육회 경기운영팀

## 7. 시·군 대표자회의

- 가. 일 시 : 2018년 7월 25일(수) 14:00 예정
- 나. 장 소 : 태안군민체육관
- 다. 토의사항
  - 1)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대진추첨 등



#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사항

#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규 정 개 정	<p>&lt;도민체육대회규정 제23조&gt;</p> <p>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설)</p>	<p>&lt;도민체육대회규정 제23조&gt;</p> <p>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최지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본회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도민체 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시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p>	◦ 전시종목운영에 따른 규정 신설
참 가 요 강	<p>&lt;4. 참가자격 다항&gt;</p> <p>5) 현역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 은 출전할 수 없다. 다만,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참가할 수 있으 며, 2017.12.31.이전부터 해당 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 한다.</p>	<p>&lt;4. 참가자격 다항&gt;</p> <p>5)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은 출전할 수 없다. 다만,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참가할 수 있으며, 2017.12.31.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한다.</p>	◦ 명칭변경
종 목 별 경기운영	<p>&lt;복 상&gt;</p> <p>1. 참가자격 가. “생략” 나. 당해 연도 <u>대한복싱협회</u>에 등록을 필한자.</p>	<p>&lt;복 상&gt;</p> <p>1. 참가자격 가. “현행과 같음” 나. 당해 연도 <u>충남복싱협회</u>에 등록을 필한자.</p>	◦ 선수 수급 원활 및 출전비용 절감
전 시 종 목	<p>&lt;미 개 최&gt;</p>	<p>&lt;도민생활체육대회 종목&gt;</p> <p>1. 그라운드골프 2. 댄스스포츠 3. 등산(산악) 4. 승마 5. 에어로빅스체조 6. 합기도</p>	◦ 도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전시종목 운영
시 범 종 목	<p>&lt;2개부문 운영&gt;</p> <p>1. 씨름(남일반부) 2. 테니스(초등부)</p>	<p>&lt;1개부문 운영&gt;</p> <p>1. 씨름(남일반부) ⇨ 폐지 2. 테니스(초등부) ⇨ 개최(유지)</p>	◦ 도민체육대회 규정 제23조 3항에 의거 시범종목 선정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 1] 육 상

## 1. 종별 및 경기종목

종 목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0m	○	○	○	○	○	○	○	○
200m	○	○	○	○	○	○	○	○
800m	○	○	×	×	○	○	×	○
1500m	×	×	○	○	×	×	○	○
3000m	×	×	○	×	×	○	×	×
5000m	×	×	×	×	○	×	○	×
멀 리 뛰 기	○	○	○	○	×	×	×	×
높 이 뛰 기	○	○	○	○	×	×	×	×
포 환 던 지 기	○	○	○	○	×	×	×	×
400mR	○		○		○		○	
계 10종목	13		14		9		9	

## 2. 참가자격

가. 학생부는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3.12.31. 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3. 참가인원

가. 감독, 코치, 주무외 선수 각 시·군별 1인 2종목 이내, 1종목 2명 이내  
 나. 400mR는 각부별 남·여 각 2명씩 출전하되 세부종목 참가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릴레이는 1인 2종목에서 제외한다.

## 4. 경기방법 : 회원종목단체 경기방법에 의함.

## 5. 채점방법

가. 육상경기부분은 학생부, 일반부를 각각 1개 경기부분으로 간주하여 배점한다.  
 나. 육상경기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구분 \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개 인 전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단 체 전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2 수 영

### 1. 종별 및 경기종목

종 목		초등학교부		중 학교 부	
		남	여	남	여
자 유 형	50m	○	○	○	○
	100m	○	○	○	○
배 영	50m	○	○	○	○
	100m	○	○	○	○
평 영	50m	○	○	○	○
	100m	○	○	○	○
접 영	50m	○	○	○	○
	100m	○	○	○	○
개인혼영	200m	○	○	○	○
계 영	200m	○	○	○	○
	400m	○	○	○	○
혼 계 영	200m	○	○	○	○
계	12종목	12	12	12	12

### 2. 참가자격

-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 3. 참가인원

- 가.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각 시·군별 1인 2종목이내, 1종목 2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후보 선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나. 계영 및 혼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별도 표시 없이 경영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4. 채점방법

- 수영 경영종목의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구분 \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개 인 전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단 체 전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3 추 구

1. 종 별 : 일반부(남), 초등학교부(남)

#### 2. 참가자격

가. 일반부는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나. 초등학교부는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3. 참가인원 :

가. 일반부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23명 이내

(25세 이상 6명, 30세이상 5명, 35세이상 4명, 40세이상 4명, 45세 이상 4명씩 신청) 단. 참가신청 후 경기당일 18명 엔트리 제출 (국내 및 국제축구협회 규정 적용)

나. 초등부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8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나. 1회전부터 결승전까지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한다.

다. 연령별 출전현황

구 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인 원	4명	3명	2명	1명	1명

5. 채점방법 :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4 야 구

1. 종 별 : 일반부(남)

### 2. 참가자격

-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을 우선적용하고, 대한야구협회에 고등학교 이상 선수등록한 자는 만25세 이상 3명이 참가가 가능하고 투수는 참가 할 수 없다.(단, 선수출신이라도 만41세 이상이면 모든 포지션을 참가할 수 있다.)

3.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8명 이내

###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횟수 7회)
- 나. 1회전부터 결승까지 무승부일 경우 - 8회전부터(IBAF)규정에 따라 승부치기로 한다.
- 다. 콜드게임 적용 - 5~6회 7점
- 라. 우천 시 추첨으로 한다.
- 마. 기타 규정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을 따른다.

### 5. 채점방법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5 테니스

1. 종 별 : 초등학교부(시범), 일반부(남·여)

### 2. 참가자격

가. 초등학교부는 참가신청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3. 참가인원

가. 초등부 : 초등학교 남, 여 각 1명

나. 일반부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7명 이내(최고 연령별 후보 1명 포함)

### 4. 경기방법

가. 초등부 : 남, 여 각 1단식, 1혼복

나. 일반부 :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고 3복식(연령별 대진)

남자 7명	25세 ~ 35세 2명	36세 ~ 45세 2명	46세 이상 3명
여자 7명	25세 ~ 30세 2명	31세 ~ 35세 2명	36세 이상 3명

5. 채점방법 : 단체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6 배 구

### 1. 종 별

가. 남자 : 초등학교부, 일반부

나. 여자 : 초등학교부, 일반부

### 2. 참가자격

가. 초등학교부는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3. 참가인원

가. 초등학교부 : 감독, 코치 외 선수 9명 이내

나. 일반부 : 감독, 코치 외 선수 13명 이내

(25세 이상 3명, 30세 이상 4명, 36세 이상 3명, 41세 이상 3명)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나. 9인제 3세트로 진행한다.(단, 초등학교부는 6인제 3세트)

구 분	25~29세	30~35세	36~40세	41세이상
인 원	2명	3명	2명	2명

### 5. 채점방법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7 탁 구

1. 종 별 : 초등학교부(남·여), 일반부

### 2. 참가자격

- 가. 초등학교부는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 3. 참가인원

- 가. 초등학교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6명 이내  
나. 일반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7명 이내(최고연령 후보 1명 포함)

### 4. 경기방법

- 가. 초등학교부는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고 5단식 2복식 단체전으로 한다.  
나. 일반부는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고 4단 1복(연령별 대진)

(25 ~ 30세) 2명	(31 ~ 35세) 2명	(36세 이상) 3명
1복	2단	2단

- 다. 출전선수 유니폼 착용
- 반바지, 반팔 상의
  - 선수 이름표 부착(등판)

### 5. 채점방법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8 복싱

1. 종 별 : 중학교부

2. 체 급 : 14체급

체 급	체 중
스 몰 급	38 kg 까 지
모 스 키토 급	42 kg "
핀 급	46 kg "
라 이 트 플 라 이 급	48 kg "
플 라 이 급	50 kg "
라 이 트 밴 텀 급	52 kg "
밴 텀 급	54 kg "
페 더 급	57 kg "
라 이 트 급	60 kg "
라 이 트 웰 터 급	63 kg "
웰 터 급	66 kg "
라 이 트 미 들 급	70 kg "
미 들 급	75 kg "
라 이 트 헤 비 급	81 kg "
계	14

### 3. 참가자격

- 가. 참가 신청지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나. 당해 연도 충남복싱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경기로 한다.
- 나. 경기시간은 1회전 2분 경기로 하되 3회전 경기로 한다.
- 다. 복싱글러브는 10온스를 사용하며 헤드기어와 호구(캡),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라. 경기도중 심판이 일방적인 공격에 상대선수와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도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승패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게임위주가 아닌 기술위주로 판정한다.

## 5. 기타사항

- 가. 체중은 평상시 체중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체중을 감량한 선수가 발견되면 대회참가 취소 및 지도자 징계
- 나. 출전 1주일 이내에 발행한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계체량은 각 체급별 경기당일 08:00~09:00사이에 정하여 실시한다.

## 6. 채점방법 : 체급별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인 원	1	1	2	4

## 9 역도

1. 종 별 : 중학교부(남)
2. 체 급 : 9체급

체 급	체 중
45 kg	45 kg 까 지
50 kg	50 kg "
56 kg	56 kg "
62 kg	62 kg "
69 kg	69 kg "
77 kg	77 kg "
85 kg	85 kg "
94 kg	94 kg "
94 kg 이 상	94 kg 초 과
계	9

3. 참가자격 : 참가 신청지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외 선수 총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각 체급 당 2명까지 참가
5. 경기방법 : 인상, 용상, 합계를 별도 경기로 한다.
6. 채점방법 :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8위까지만 채점하고, 인상·용상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합 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인상, 용상배점	3점	2점	1점	-	-	-	-	-

### 7. 기타사항

- 가. 체중은 평소 체중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체중감량은 절대 금지하며 계체량은 1회만 할 수 있다.
- 다. 경기를 종료한 후 어떤 선수의 신체규격, 골격사항 등을 관찰하여 감량하였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그 선수를 계체하며 1.5kg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선수의 경기기록은 몰수되고 해당 감독, 코치는 중징계 할 수 있다.
- 라. 기타 규정은 대한역도연맹 규정을 따른다.

## 10 씨 림

### 1. 종 별 : 초등학교부(남), 중학교부(남)

체 급	경 장 급	소 장 급	청 장 급	용 장 급	용 사 급	역 사 급	장 사 급
초등학교부	40kg이하	45kg이하	50kg이하	55kg이하	60kg이하	70kg이하	70kg초과
중학 교부	60kg이하	65kg이하	70kg이하	75kg이하	80kg이하	90kg이하	90kg초과

2. 참가자격 :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체급별 1명이며, 체급별 후보 선수 없음.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나. 무승부일 경우 주의나 경고를 받지 않은 선수가 승자가 되고,  
경고를 받은 선수가 없을 경우 체중이 가벼운 선수를 승자(계체량승)로  
하며, 체중이 같을 때는 추첨한다.

5. 기타사항 : 모든 선수는 자기 체급 이상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 체급 이하 체급에는 참가할 수 없다.

6. 채점방법 : 개인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인 원	1	1	2	4

## 11 유 도

1. 종 별 : 중학교부(남·여)

2. 체 급 : 17체급

남 자 중 학 교 부	여 자 중 학 교 부
48 kg 이 하	42 kg 이 하
51 kg "	45 kg "
55 kg "	48 kg "
60 kg "	52 kg "
66 kg "	57 kg "
73 kg "	63 kg "
81 kg "	70 kg "
90 kg "	70 kg 이 상
90 kg 이 상	×
9	8

3. 참가자격 : 참가 신청지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는 체급별 1명

### 5. 경기방법

가.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인전

나. 모든 선수는 자기 신청체급에 한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다. 경기시간은 남자중학교부 4분, 여자중학교부 3분 단위로 한다.

라. 기타사항은 대한유도회 심판, 경기규칙에 의한다.

6. 채점방법 : 체급별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인 원	1	1	2	4

## 12 검 도

1. 종 별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일반부(고·대·일)

### 2. 참가자격

가. 학생부는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다. 대한검도회 및 충남검도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자 또는 대한검도회 및 충남검도회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3.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19명 이내

초등학교부 5명, 중학교부 5명, 일반부 5명(고 2, 대·일 3)  
부별로 후보 각 1명씩 시·군별 19명 이내 참가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승자수법

나. 경기시간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4분, 일반부 5분

다. 무승부일 경우 제한시간 없이 단판승부로 대표전을 한다.

5. 채점방법 : 단체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13 궁 도

1.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7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단체전 기록경기로 하되 7명이 참가하여 상위자 5명의 성적합계로 순위를 정한다.

나. 시·군 1명씩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되 1명이 5순(1순:5발)을 발사한다.

5. 채점방법 : 단체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 14 배드민턴

1. 종 별 : 일반부(남·여)
2. 참가자격 :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7명 이내(최고 연령후보 1명 포함)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3복식 연령별 대진)
  - 나. 모든 경기는 랠리포인트제로 실시한다.

구 분	25 ~ 35세	36 ~ 45세	46세 이상
남 자 7명	2명	2명	3명
여 자 7명	2명	2명	3명

## 5. 채점방법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15 태권도

1. 종 별 : 초등학교부(남), 중학교부(남), 고등학교부(남)

2. 체 급 : 30체급

체 급	남자초등학교부	남자중학교부	남자고등학교부
핀 급	32kg까지	41kg까지	54kg까지
플 라이 급	32kg초과 34kg까지	41kg초과 45kg까지	54kg초과 58kg까지
밴 텀 급	34kg " 36kg "	45kg " 49kg까지	58kg " 63kg "
페 더 급	36kg " 39kg "	49kg " 53kg까지	63kg " 68kg "
라 이 트 급	39kg " 42kg "	53kg " 57kg까지	68kg " 74kg "
L 웰 터 급	42kg " 45kg "	57kg " 61kg까지	×
웰 터 급	45kg " 49kg "	61kg " 65kg까지	74kg " 80kg "
L 미 들 급	49kg " 53kg "	65kg " 69kg까지	×
미 들 급	53kg " 57kg "	69kg " 73kg까지	80kg " 87kg "
L 헤 비 급	57kg " 61kg "	73kg " 77kg까지	×
헤 비 급	61kg초과	77kg초과	87kg초과
계	11	11	8

3. 참가자격

- 선수는 참가 신청지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국기원 유품, 단증 소지자

4. 참가인원 : 각급별(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개인전

6. 경기시간

가. 초,중등부 : 매회 2분 3회전경기(중간휴식 1분)

나. 고등부 : 매회 3분 3회전경기(중간휴식 1분)

7. 채점방법 : 체급별 5위까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인 원	1	1	2	4

## 16 볼링

1. 종 별 : 일반부(남·여)
2. 참가자격 :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6명 이내
4. 경기방법 : 단체전 5인조 전으로 실시함.
5. 채점방법 :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 17 보디빌딩

1. 종 별 : 고등학교부(남), 일반부(남)

2. 체 급 : 12체급

체 급	고 등 학 교 부	일 반 부
플 라 이 급	×	60kg까지
밴 텀 급	65kg까지	60kg초과 ~ 65kg까지
라 이 트 급	65kg초과 ~ 70kg까지	65kg " ~ 70kg "
웰 터 급	70kg " ~ 75kg "	70kg " ~ 75kg "
라이트미들급	×	75kg " ~ 80kg "
미 들 급	×	80kg " ~ 85kg "
라이트헤비급	×	85kg " ~ 90kg "
헤 비 급	75kg초과	90kg "
계	4	8

### 3. 참가자격

- 가. 고등학교부는 참가 신청지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일반부는 1998.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4. 참가인원 : 고등학교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4명 이내  
 일반부는 감독, 코치, 주무 외 8명 이내

### 5. 경기방법

- 가. 득점에 의한 순위 결정  
 나. 참가선수는 체체 시 월체를 할 수 있다.  
 단, 참가 시·군에서 한 체급에 2명 이상 신청할 수 없다.

### 6. 채점방법

- 가.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8위 까지만 채점한다.  
 나. 기타 규정은 대한보디빌딩협회 규정을 따른다.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18 게이트볼

1. 종 별 : 일반부(남·여)

2. 참가자격 : 1958.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7명 이내

(60~65세 2명, 66~70세 2명, 71세 이상 3명)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연령별 출전현황

구 분	60~65세	66~70세	71세 이상
인 원	2명	2명	3명

### 5. 채점방법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19 족 구

1. 종 별 : 일반부(남)

2. 참가자격

○ 1993.12.31.이전 출생자로서 대회 참가요령 4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1명, 선수 7명 이내

(25세 이상 2명, 30세 이상 3명, 40세 이상 2명씩 신청)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나. 4인제 3세트로 진행한다.

다. 연령별 출전현황

구 분	25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이상
인 원	1명	2명	1명

5. 채점방법

등 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팀 수	1	1	2	4

## ㉔ 그라운드골프

1. 종 별(분야) : 단체전, 개인전

2. 참가자격 : 각 시군체육회 및 그라운드골프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3. 참가인원 : 시군별 12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남자6명, 여자4명))

### 4. 경기방법

- 표준코스 8홀 2라운드(16홀) 실시 합계 타수에 의한 개인전
- 그라운드(16홀) 연속 진행
- 점수기록은 기록자가 함
- 라운드 종료 후 기록 책임자는 기록지에 각자 점수 확인란에 서명하여 본부석에 제출
- 조 편성은 개최식이 끝난 후 조직하거나 각 시군에서 참가신청서 접수 후 편성

### 5. 채점방법

- 8홀 그라운드(16홀) 합계 최저 타순으로 함
- 동 타수일 경우 홀인수가 많은 선수로 하고 그 이후는 타수가 많은 선수 순으로 그 외는 연장자 순으로 함

### 6. 주의 및 기타사항

- 본 대회에 출전자는 경기당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한다.
- 참가선수의 복장은 각 시군의 형편에 맞게 간편복으로 착용하고, 모자, 공, 마크장갑, 우의 등은 각자 준비한다.
- 기타 경기규칙은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규칙에 준하고, 이외 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회 본부 결정에 의한다.



## ㉑ 댄스스포츠

1. 종 별(분야) : 개인전 (일반부, 장년부), 단체전

2. 참가자격 :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참가규정에 의함

### 3. 참가인원

○ 팀 구성 기준: 시군별 20명이상 40명 이내(개인전 포함)

#### ① 개인전

- 일반부: 만20세 이상의 일반인

- 장년부: 만45세 이상의 일반인(파트너 중 나이 많은 기준)

#### ② 단체전(포메이션): 5개조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야 함

- 만20세 이상의 일반인

### 4. 경기방법

○ 참가 신청자는 전원 예선출전

○ 종목 구분별 8개조 이하일 때는 바로 결승

○ 개인전 참가자는 중복출전을 할 수 없다.(라틴과 모던 합해서 1회만 허용 중복출전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점수에 반영이 안 됨)

○ 등록선수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확인, 대회출전 시 참가선수 엔트리에 없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음)

○ 포메이션은 대표 한 팀을 표기해주기 바람. 나머지 팀은 번외경기임.

#### ※ 경기시간

- 리허설 및 예선: 종목당 1분 10초

- 본선경기(개인전): 종목당 1분 30초

- 단체전(포메이션): 본선 4분 이내(4분이상일 때 감점)

## 5. 채점방법

### 【단체전】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배점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 【개인전】

#### - 일반부

(라틴1종목) J : 1위(25점), 2위(20점), 3위(15)

(라틴2종목) J,R: 1위(25점), 2위(20점), 3위(15)

(모던1종목) W: 1위(25점), 2위(20점), 3위(15)

(모던2종목) W,T: 1위(25점), 2위(20점), 3위(15)

#### - 장년부

(라틴1종목) J: 1위(25점), 2위(20점), 3위(15)

(라틴2종목) J,R: 1위(25점), 2위(20점), 3위(15)

(모던1종목) W: 1위(25점), 2위(20점), 3위(15)

(모던2종목) W,T: 1위(25점), 2위(20점), 3위(15)

※ 시군 대표 단체전성적+개인전성적=종합순위

## 6. 주의사항

### ○ 대회규정

가. 모든 참가선수는 대회 예행연습에 참가해야한다.

나. 대회시작 전에 도착하여 백넘버를 교부 받아야 한다.

다. 1종목 출전작품은 기본베이직 휘겨에 준한다.

(2종목 이상은 바레이션 가능)

라. 대회복장

- 대회복장은 과다노출이나 퇴폐적인 의상은 금한다.
-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악세서리는 사용할 수 없다.
- 마루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슈즈는 신을 수 없다.
- 모든 선수는 규격화된 댄스용 슈즈를 신어야한다.(필히 힐캡 사용)

마. 대회진행 순서에 따라 선수호명 불참 시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바. 행사도중 발생하는 개인적인 질병, 사고는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기타 기록하지 않은 규정은 대한민국 댄스스포츠연맹 또는 국제통례에 준한다.

아. 부정한 부분에 대하여 대회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대회감독관 배정)

○ 대회 운영방침 및 세부심사기준

가. 인원점수는 단체전 선수와 개인전 선수를 모두 포함한 지역대표 선수를 말한다.

나. 인원 점수 만점 기준은 감독과 코치를 제외한 시군별 선수 지원중력의 평균점 20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하의 팀은 1커플 기준으로 2점씩 감점 처리한다.

다. 단체전 대표팀이 1팀 이상으로 구성된 시군은 상위 성적을 거둔 팀을 기준으로 최종 점수에 반영한다.

라. 대회음악은 생활체육 특성상 모든 장르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안무 구성과 베이직 부분은 심판 제량의 의해 판단하며, 댄스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댄스스포츠 정식종목 외의 댄스에 대해서는 실격처리 한다.

바. 대회당일 참가선수 인원파악에 대한 총점은 총괄 심판위원장이 최종 관리 감독 및 채점한다.

사. 시군대표선수 외 선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대회당일 추가 선수는 일체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군대표선수 외 출전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고 체육회 또는 실업팀에 선수 등록한자 또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 경기음악

- 국제대회에서 공인된 음악속도를 고려하여 대회 주최 측에서 선별하여 사용
- 단체전(포메이션)은 대회당일 주최 측에 준비된 CD를 제출(각 팀 대표)

## 7. 기타사항

-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부분별 9명 이상 심사위원 위촉(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심판자격을 취득한자)
  - 선수, 코치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경기 및 재심사는 있을 수 없다.
  - 심사결과를 확인하려면 대회가 끝난 후 1주 이후에 주최 측에 요구할 수 있다.
  - 심사기준(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 ※ 채점기준: 인원(20점), 통일성(20점), 음악(20점), 안무(20점), 베이직(20점)
-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 하여야 한다.

## ㉓ 등 산(산악)

1. 종 별(분야) : 혼성부, 개인전

### 2. 참가자격

- 시군 산악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등산 단체 및 클럽으로 해당 시군연맹 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대회 규정·규칙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3. 참가인원

- 시군별 16명(선수14명, 임원2명)
- 팀 구성 기준
  - 청년부/장년부 단체 각1팀 ⇨ 1팀당 5명(팀당 여성 2명이상 포함)
  - 개인전 4명(청/장년 남·여 각1명씩)
    - 청년부: 남·여(만25세 이상~만50세 미만)
    - 장년부: 남·여(만50세 이상~)

### 4. 경기방법

- 시군별 팀 대항전
- 각 시군 산악연맹은 전 종목별 1개 팀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지정코스 완주(각 심판 포스트 경유 확인)
- 등산 출발 2시간 이후~3시간 30분 이내 골인을 평가 기준 한다.

### 5. 채점방법

- 각 부문별 참가선수는 등산로에 지정된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위원의 확인 및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완주한 팀으로 순위 결정

### 6. 주의 및 기타사항

- 등산 경기 중 개인이 필요한 준비물은 각 개인이 지참.  
(중식, 식수, 음료, 간단한 구급대책, 기타)

- 경기 중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개인 신체능력을 자신이 파악한 후 등산에 참가하며, 일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대회에 참가할 것)
- 등산경기 중 발생한 쓰레기와 오물은 버리지 말고 최초 출발지점까지 운반한다.
- 시군 선수 및 일반산행 참가자는 사전 등록한 인원내 한하여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 참가자는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와 준비를 해야 한다.  
(인화물질 휴대금지)
- 시상(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시군산악연맹 회장 또는 시군 전무이사(사무국장)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점수열람)
-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기타 경기규칙은 대한산악연맹 경기규칙에 준함.

## 23 승 마

### 1. 종 별(분야)

경기 종목	4종목	내 용
	장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경기: 유소년장애물-I II Class(60/80cm)</li> <li>■ 제2경기: 일반인 장애물-II / IV Class(80/100cm)</li> </ul>
	권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경기: 유소년 권승 A(장애물 40cm 포함), B경기</li> <li>■ 제4경기: 일반인 권승 A(장애물 40cm 포함), B경기</li> <li>■ 제5경기: 시니어(55세이상) 권승 B경기</li> </ul>
	릴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경기: 유소년 릴레이A(장애물 40cm 포함), B경기</li> <li>■ 제7경기: 일반인 릴레이A(장애물 40cm 포함), B경기</li> <li>■ 제8경기: 시니어(55세이상) 권승 B경기</li> </ul>
	마장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경기: 유소년 마장마술(국산마)-IV Class(Preliminary)</li> <li>■ 제10경기: 일반인 마장마술(국산마)-IV Class(Preliminary)</li> </ul>

### 2. 참가자격

- 선수는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승마협회를 거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선수는 본 협회(충남도) 회원등록을 필한 자만 참가 할 수 있다.
- 선수는 모든 종목의(릴레이, 마장마술 제외) 2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장애물 80cm/100cm 출전 시 2경기 출전으로 인정)

### 3. 참가인원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는 최대 13명까지이며 후보 선수 및 예비 마는 3명(두)/선택 할 수 있다.

내 용	참가 구분
■ 마장마술-IV Class(Preliminary)	1마/3인
■ 장애물 IV Class(100cm)	
■ 장애물-II Class(80cm)	
■ 장애물-I Class(60cm)	
■ 권승-A (40cm포함)	
■ 권승- B	
■ 릴레이- 단체경기	1팀당/ 1마

#### 4. 경기방법

##### ○ 마장마술 경기

1. 경기과목은 마장마술-IVClass(Preliminary)과목을 실시한다.
2. 참가마필은 드로레인, 벤데지 및 발목보호대(아대)사용을 금한다.
3. 채점방식은 FEI 규정에 의한다.
4. 참가선수 마복은 3점식 헬멧, 상의는 자켓은 장애물이나 마장마술 복장. 밝은색 와이셔츠, 소매는 하얀색, 하의는 백색 계통 밝은색, 타이는 백색 타이 또는 백색 머플러의 복장이 아닌 자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 ○ 장애물 경기

1. 장애물 경로도는 경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로답사 직전에 배부하거나 경로설계자의 설명으로 대체한다.
2. 재경기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참가선수 마 복은 3점식 헬멧, 상의는 자켓 복장. 밝은색 와이셔츠, 소매는 하얀색, 하의는 백색 계통 밝은색, 타이는 백색 타이 또는 백색 머플러의 복장이 아닌 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4. 말은 기존 입상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에 출전할 수 있다.
5. 대한승마협회에서 여권 발급받은 말과 한국마사회에 승용마 등록을 마친 말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최근 6개월 이내이며, 말 여권을 지참 하여야 한다.
6. 장애물 II Class(80cm)경기는 장애물 IV Class(100cm) 이상에서 입상 성적이 있는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7. 장애물 IV Class(100cm)경기는 장애물 B class(120cm) 이상에서 입상성적이 있는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8. 장애물 II Class(80cm), IV Class(100cm) 참가 선수 및 입상 성적이 있는 선수는 I Class(60cm) 종목에 출전한 수 없다.
9. 유소년 선수는 프로텍트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실격
10. 3회 거부 및 1회 낙마 시 ⇨ 실권  
1회 거부 시 감점 4점. 2회 거부 시 감점 8점  
3회 거부 시 실권 거부로 인해 장애물 전도 시 정지한 후  
감점 4점(1회) 또는 감점 8점(2회)에 각각 6초의 시간이 가산된다.



○ 권승 경기

1. 경로이탈, 고깔 넘어뜨림, 장애물(까발레티 포함) 낙하 시에는 10초 부과
2. 복장 자유마복

○ 릴레이 경기

1. 경로도는 경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로답사 직전에 배부하거나 경로 설계자의 설명으로 대체 한다. 코스는 경로도를 기준으로 설계되나 경기장 여건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선수는 일반부 혼성팀, 유소년 단성팀 이나 혼성팀으로 구성한다.
2. 정해진 출발 및 반환장소에서 출발하여 1번 장애물을 넘고 2번 반환점을 한 바퀴 돌고 3번 장애물을 넘고 4번 반환점을 한 바퀴 돌아 정해진 구역에서 다음 선수와 말을 바꿔 타는 경기이다.
3. X형 장애물의 최고 높이는 40cm이다.
4. 장애물을 낙하했을 경우 다음 반환점을 두 바퀴 돌아야 한다.
5. 경기 중 반환점을 전도하거나 정해진 코스를 위반하면 실권이다.
6. 경기 중 낙마 및 3회 이상 장애물을 거부하면 실권이 된다.
7. 정해진 기승장소에서만 교대가 가능하며, 이를 지나칠 경우 돌아와 정해진 구역에서 다음 기승자가 말을 바꿔 타고 출발하여야 한다.
8. 보법(속보, 구보)은 자유이며 순위 결정시 경기종료 후 결승점 통과시간이 제일 빠른 팀을 1위로 하거나 토너먼트 형식으로 후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 전 경기위원장이 선택한다.)
9. 안장에 손잡이(∩자형)이가 장착된 안장은 사용할 수 없다.
10. 선수 및 말 보호 차원에서 채찍 및 박차 사용을 금지한다.
11. 복장 자유마복

## 5. 채점방법

1. 장애물은 1등-60점, 2등-50점, 3등-40점, 4등-30점, 5등 이하-20점.
2. 릴레이 1등-90점, 2등-80점, 3등-70점, 4등-50점, 2회전 진출팀-40, 참가자 1회전 팀 30점으로 한다.
3. 마장마술 1등-60점 2등-50점 3등-40점 3등 이하-20점
4. 각 종목 참가 시군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각 종목별 최고 득점을 획득한 선수 소속 시군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 종합 순위 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메달 획득 수가 많은 시군이 우선시 된다. (금/은/동메달 순)

## 6. 주의 및 기타사항

1.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필히 규정 된 정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복장 위반 시는 경기규정에 따라 실권되며 단, 당일 일기를 고려하여 심판부의 승인 하에 상의 승마복 탈의로 경기를 진행할 수 도 있다.
3. 모든 선수는 경기 당일 신분증(회원증, 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4.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군협회에서는 선수 전원을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은 보험약관에 준하여 한다.
5. 말에 대한 어떠한 경우의 사고는 참가자 본인의 책임이다.
6. 기타 경기규칙은 대한승마협회 경기규칙에 준함.

## ㉔ 에어로빅스체조

1. 종 별(분야) : 학생부, 일반부, 노년부

### 2. 참가자격

- 충청남도체조협회 생활체조 동호인으로 시군체육회 및 종목별협회에 등록된 동호인클럽 또는 단체로서 해당 시군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3. 참가인원

- 시군별 48명 이내(1개 팀당 참가인원 12명 이상)
- 팀 구성 기준
  - 대회참가분야(4개 분야)  
에어로빅 및 건강체조, 기구체조, 민속체조 및 수련체조, 생활댄스 체조(재즈, 힙합, 방송댄스, 밸리댄스, 포메이션 댄스 등)
  - 참가대상부문  
학생부(초등생출전불가), 일반부, 노년부(만60세 이상)

### 4. 경기방법

-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운영위원장의 주도하에 대회조직위원회의 임원이 주관 한다.
- 경기시간은 팀당 4분 이내로 하고, 입·퇴장 시 별도의 음악사용은 금한다.  
(시간 초과 시 5초당 -1점 감점)  
※ 단, 국민건강 체조는 6분(경기시간만 적용)으로 정함.
- 1팀의 구성인원은 12명(단, 학생부는 5명이상으로 팀 구성) 이상으로 한다.  
(정원 부족 시 1명당 -1점 감점)
- 선수교체는 출전 1시간 전까지 대회 본부에 신고 되어야 한다.
-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 시군협회장을 통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는 대회 본부가 심의하여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 경기 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회의 결정에 따른다.

## 5. 채점방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점으로 한다.
- 동점일 경우
  - ① 최고·최저점수를 뺀 총합계 점수가 높은 팀
  - ② ①항이 같을 경우 5명의 심사위원 총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팀
  - ③ ②항이 동점일 경우 참가인원이 많은 팀
  - ④ ②③항이 같을 경우 장애인-노인-학생-일반부 속한 팀
- 채점의 모든 가·감점은 평균 점수에서 계산된다.
- 종합점수집계는 참가분야 중 참가분야 수가 많은 시군을 우선으로 하고, 참가분야 수가 같을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점수를 모두 더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팀을 우선으로 한다.
- 참가팀에 의해 10분 이상 경기 지연시 실격처리 한다.

## 6. 주의 및 기타사항

- 경기 운영을 방해하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 선수들을 방해하는 고성방가를 행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즉시 퇴장시키고 소속팀의 경기를 몰수한다.
- 경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육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한다.
-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기타 경기규칙은 대한체조협회 생활체조분과 경기규칙에 준함.

## ㉔ 합기도

1. 종 별(분야) : 혼성부

2. 참가자격

- 2018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시군에 편승된 자로써, 시군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각 시군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참가인원

- 시군별 12명(감독1명, 코치1명, 선수 10명)
  - 호신술보조자 4명은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
- 연령기준
  - 만16세 이상: 7명
- 참가종목 10종목(호신술경기 8종목, 기록경기 2종목)
  - ① 제1종목 호신술(만14세이상): 1명
    - 손목수, 의복수, 앞·뒤수, 좌수 중에서 호신술 4수
  - ② 제2종목 호신술(만14세이상): 1명
    - 방권술, 봉족술, 방투술, 방검술 중에서 호신술 4수
  - ③ 제3종목 호신술(만30세이상): 1명
    - 손목수, 의복수, 앞·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중에서 선택하여 호신술 4수
  - ④ 제4종목 중년부 호신술(만40세이상): 1명
    - 손목수, 의복수, 앞·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중에서 선택하여 호신술 4수
  - ⑤ 제5종목 장년부 호신술(만50세이상): 1명
    - 손목수, 의복수, 앞·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중에서 선택하여 호신술 4수
  - ⑥ 제6종목 여자 호신술 (만14세이상): 1명
    - 손목수, 의복수, 앞·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중에서 선택하여 호신술 4수

- ⑦ 제7종목 여자 중년부 호신술 (만30세이상): 1명
  - 손목수, 의복수, 앞·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중에서 선택하여 호신술 4수
- ⑧ 제8종목 여자 중년부 호신술 (만40세이상): 1명
  - 손목수, 의복수, 앞·뒤수, 좌수, 방권술, 방족술, 방투술, 방검술  
중에서 선택하여 호신술 4수
- ⑨ 제9종목 기록경기 길이나법(만14세이상): 1명
  - 회전낙법
- ⑩ 제10종목 기록경기 발차기(만14세이상): 1명
  - 두발모아높이차기

#### 4. 경기방법

- 경례의 구호는 “합기” 로 한다.
- 호신술경기 1~8종목은 토너먼트 경기를 한다.  
단, 당일 경기위원회의 승인으로 종합 점수제로 변경 할 수 있다.
- 청·홍 선수는 1회에 1수씩 3회를 시연하고 마지막 4수는 비교술기를 한다.
- 호신술경기는 허구적인 술기는 배제하고 호신술기의 연결 수는 4수까지 허용되며, 5수 이상의 연결술기는 실격 처리한다.  
(치기 및 처리술기도 1수에 포함된다)
- 경기에 필요한 개인용품은 선수 본인이 준비해야한다.

#### 5. 주의 및 기타사항

- 출전선수는 심판위원의 판정에 승복하여야 함.
- 경기당일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학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기타 경기규칙은 대한민국의합기도중앙협회 경기규정에 준함.

#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관련 규정

#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제정 2016. 8. 24.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정 2018. 1. 30,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육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도민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① 도민체육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본회에 권한이 있다.

② 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주경기장과 모든 경기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대한 권리는 본회가 독점적으로 가진다.

**제3조(대회횟수)** 도민체육대회 횟수는 1945년 10월 대전에서 개최한 도민체육대회 겸 전국 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대회를 제1회로 기산하고 부득이 개최하지 못한 6.25동란 기간을 제외하고 통산한다.

**제4조(경기행사 제한)** 도민체육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본회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 회원종목단체는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회구분)** 도민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대회를 겸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대회상징마크)** ① 도민체육대회 대회기의 상징마크는 충청남도 상징마크를 중앙에 두고 월계수 잎의 원으로 제작한다.

② 게양용 대회기는 가로 540센티미터, 세로 360센티미터로 제작하고, 개최지 전달용 대회기는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제작한다.

③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기를 주경기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개회식시 게양하고 폐회식에 본회 회장에게 반납한다.

**제7조(대회표어)** ① 도민체육대회 표어는 도민체육대회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최지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여 다중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대회가)** 도민체육대회 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승리의 노래를, 개회식 및 폐회식 후에는 충남도민의 노래를 사용한다.

**제9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①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②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회 엠블럼 및 마스코트와 대회구호)** 도민체육대회의 홍보 및 대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 엠블럼과 대회 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장 도민체육대회위원회

**제11조(설치)** 도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민체육대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관련 부지사 및 도 체육업무관련 과장, 도교육청 체육업무관련 과장, 시·군 지회 사무국장 중 1인, 당해연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부단체장, 본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본회 이사, 회원종목단체장,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본회 사무처의 도민체육대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기종목 채택 및 제외에 관한 사항
3. 참가요강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상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5. 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민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본사업과 방침은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장은 체육업무관련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부단체장의 임기는 당해 도민체육대회 개최일로 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본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위원회 실비변상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개최지 선정 등

**제17조(개최지 선정)** ①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체육회는 대회개최 24개월 이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종 경기장(체육관)의 시설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체육관) 시설계획 및 준공일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포함)
4. 보증서(개최지 시장·군수)
5. 선수단 숙박 및 수송과 관련한 계획
6. 기타 참고사항

② 본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개월 전에 개최지를 확정한다.

③ 같은 연도에 유치신청한 시·군이 복수일 때에는 3년간의 개최지를 일괄 선정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연도에 대회일정을 연기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취소 당시의 개최지에서 다음연도에 개최 한다.

**제18조(준비위원회)** ① 도민체육대회 개최 시·군에 대회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늦어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4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도민체육대회 개최 3일전에 관련 업무를 도민체육대회 임원에게 인계한 후 임원으로 계속 운영하며 대회종료 후 이를 폐지한다.

**제19조(기능)** 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2. 도민체육대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민체육대회에 관련되는 사항
- ②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민체육대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구성)**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21조(임원의 선임)** 위원장은 개최지 시·군회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지의 사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장 대회개최

**제22조(개최시기)** 도민체육대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대회기간은 3~5일로 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개최시기 및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경기부문)** ① 도민체육대회의 경기종목은 본회 회원종목단체의 종목으로 한다. 다만 도민체육대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목은 예외로 한다.

- ② 보급,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목은 도민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종목 또는 시범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
- ③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2년간 운영하여 평균 8개 시·군 이하로 참가한 종목은 폐지한다.
- ④ 개최지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도민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시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4조(참가자격)** ①도민체육대회는 각 시·군 체육회에서 선발한 선수 및 단체팀이 참가하며, 아마추어 규정 및 각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 ② 각 시·군체육회는 도민체육대회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제25조(참가신청)** ① 시·군체육회장은 선수 및 임원을 대회요강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본회에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신청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출전금지)** 참가 신청한 선수 또는 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에 불참하거나 경기 중 기권한 때에는 차기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

## 제5장 경기 및 심판

**제27조(경기운영)** ① 도민체육대회의 모든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과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②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의 경우 도민체육대회 위원회의 종목 제외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외된 종목은 3년간 확정 배점 50%를 적용하고 2회 이상 발생 시 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하며 3년이 경과하여야 대회종목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

**제28조(경기구분)** ① 도민체육대회 개최 종목과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록경기과 비기록경기 구분

가. 기록경기 : 육상, 수영, 사이클, 역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조정, 볼링, 인라인롤러, 요트, 근대5종, 카누, 골프, 보디빌딩(17개 종목)

나. 비기록경기 :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검도,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게이트볼, 족구(20개 종목)

2. 단체경기과 개인 및 개인단체경기

가. 단체경기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족구(8개 종목)

나. 개인 및 개인단체경기 : 육상, 수영, 테니스, 정구, 탁구,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인라인롤러, 요트, 근대5종, 카누, 골프, 보디빌딩, 게이트볼(29개 종목)

**제29조(선발팀구성)** 단체경기 및 개인경기 단체전은 단일팀 또는 선발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30조(경기방법)** ① 모든 경기는 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② 토너먼트 경기중 3위~4위전과 5위~8위전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률 3위와 동률 5위로 한다.

③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되 개최지 시·군 선수 또는 팀에 시드를 배정한다.

④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 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경기일정 및 대진추첨)**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며 경기대진은 각 시·군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회원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이의신청)**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할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이의는 당해 경기부문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당해 경기부문 심판부장의 판결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에 관한 사항은 대회본부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33조(무자격선수)** ① 무자격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수 또는 그 소속팀을 실격으로 처리하고 그 선수 또는 팀이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한다.

② 실격선수 또는 그 소속팀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다시 회복되지 아니한다.

③ 무자격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실격된 경우 소속 시·군의 그 해당종목은 차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④ 무자격선수라 함은 출전선수의 인적사항과 출전세부종목이 참가신청서 또는 참가선수명단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선수를 말한다.

⑤ 해당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와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종목은 해당 종별을, 개인경기는 해당 세부종목 또는 체급을 말한다.

## 제6장 채점 및 시상

**제34조(순위결정)** 도민체육대회의 종합순위는 종목별 또는 부문별 종합득점의 합계점수로 결정한다.

**제35조(채점방법)** ① 도민체육대회의 종목별 또는 부문별 종합득점은 참가 시·군수에 의한 배점으로 하며,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에 100을 곱한 수를 말한다.

② 육상종목은 일반부, 학생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채점한다.

③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성적과 3·1절기념 도지사기 시군역전경주대회 성적을 각각 1개 종목으로 채점한다.

④ 도민체육대회 채점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시상)** 도민체육대회의 시상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종합시상

가. 1위 : 우승기, 도지사배, 상장

나. 2위 : 준우승기, 도지사배, 상장

다. 3위 : 3위기, 도지사배, 상장

### 2. 경기종목별 종합시상

가. 1위 : 도지사배, 상장

나. 2위 : 도지사배, 상장

다. 3위 : 도지사배, 상장

3. 경기종목별 세부종목시상

- 가. 1위 : 금메달, 상장
- 나. 2위 : 은메달, 상장
- 다. 3위 : 동메달, 상장

4. 특별상 시상

- 가. 성취상
  - 1위 : 도지사배, 상장
  - 2위 : 도지사배, 상장
  - 3위 : 도지사배, 상장
- 나. 모범선수단상(1시군) : 도지사배, 상장

5. 시범경기시상

- 가. 1위 : 금메달, 상장
- 나. 2위 : 은메달, 상장
- 다. 3위 : 동메달, 상장

## 제7장 개 · 폐회식

**제37조(참가)** 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때에는 시·군 임원과 선수 전원이 참가한다.

**제38조(일정)** 개회식은 대회 첫째 날, 폐회식은 대회 마지막 날 경기종료 후에 진행한다.

**제39조(개·폐회선언)** 도민체육대회 개회선언은 대회 임원장이 하고 폐회선언은 개최지 회장이 한다.

## 제8장 대회임원 및 부서

**제40조(대회임원)** 도민체육대회 임원은 본회 회장이 결정한다.

**제41조(운영부서)** 도민체육대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총무부 2. 경기부 3. 기록부 4. 심판부 5. 시설부 6. 섭외부
- 7. 의무부 8. 식전부 9. 성화부

**제42조(회원종목단체 임원)** 도민체육대회 경기부문별 임원은 본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본회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9장 소청심의위원회

**제43조(소청 및 이의신청)**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소청 및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44조(구성)** 소청심의위원회는 대회 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 경기, 기록, 심판 및 대회본부 임원 중 대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2명으로 한다.

**제45조(기능)** 소청심의위원회는 소청 및 이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의결한다.

1. 제명처분
2. 기한부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3. 잔여경기 몰수
4. 견책
5. 기타

## 제10장 보 칙

**제46조(시행세칙)** ① 도민체육대회의 운영과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민체육대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과 관련규정의 제정 시 경비가 수반되는 사항은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본회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회와의 동일성)** 이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2016년 8월 24일 이전의 (구)충청남도체육회가 주관하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시·군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최지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

제정 2016. 8. 24.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도민체육대회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책임)**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육대회”라 한다)의 모든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책임하에 이를 진행한다.

**제3조(경기규칙)** 도민체육대회의 경기는 이 내규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을 따른다.

**제4조(경기일정)** 도민체육대회의 경기일정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작성하며 충청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제5조(경기종목)** 도민체육대회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 1. 기록경기종목

가. 개인기록경기 : 육상, 수영, 사이클, 역도, 승마, 요트, 근대5종, 카누, 골프

나. 개인회원종목단체종목 및 개인기록경기 : 궁도, 양궁, 사격, 체조, 조정, 볼링, 롤러, 보디빌딩

## 2. 토너먼트경기종목

가. 단체경기종목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족구

나. 개인회원종목단체종목 : 테니스, 정구, 탁구, 검도, 펜싱, 배드민턴, 게이트볼

다. 개인경기종목 : 복싱, 레슬링, 태권도, 씨름, 유도

**제6조(토너먼트경기)** ① 토너먼트경기로 진행되는 단체경기, 개인단체경기, 개인경기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1번 시드는 개최지 팀에 배정한다.

② 토너먼트경기의 대진은 시·군대표자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③ 토너먼트경기에 있어서 순위전(3~4위전, 5~8위전)을 행하지 아니한다. 무승부일 경우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제7조(토너먼트경기 순서)**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표와 시드배정 및 경기진행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경기기록 관리)** 도민체육대회의 모든 경기기록은 회원종목단체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책임자가 확인 서명하여 대회본부 기록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9조(경기심판)** 도민체육대회의 경기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규정을 따르되 그 회원종목단체가 지정한 심판이 담당한다.

**제10조(소청위원회)** ① 도민체육대회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민체육대회 소청위원회(이하 “소청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소청위원회에는 해당 시·군 임원 3명(총감독, 이사 중 1명, 종목별 감독 또는 팀 감독)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부장만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소청위원회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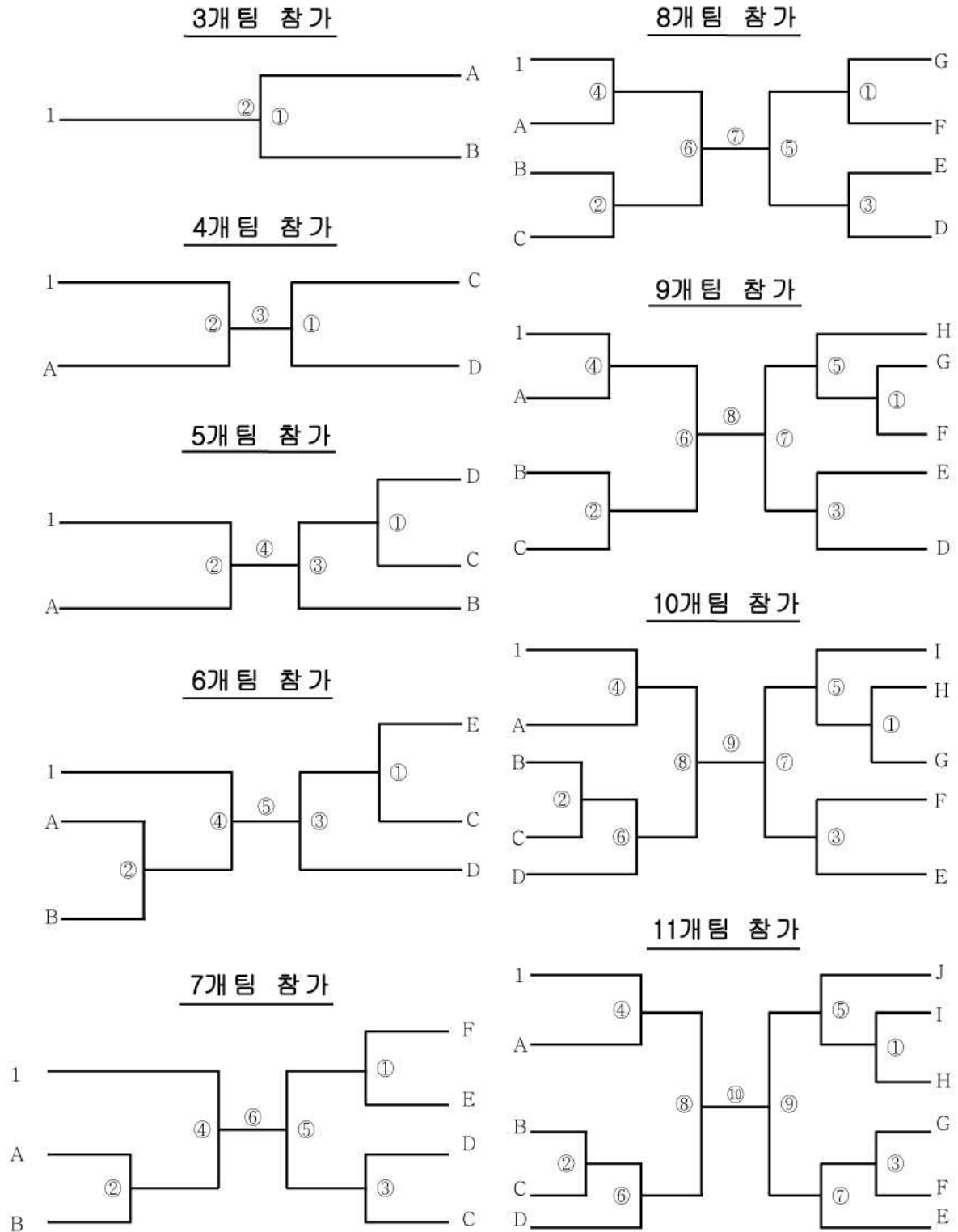
**제11조(보칙)** 도민체육대회 경기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민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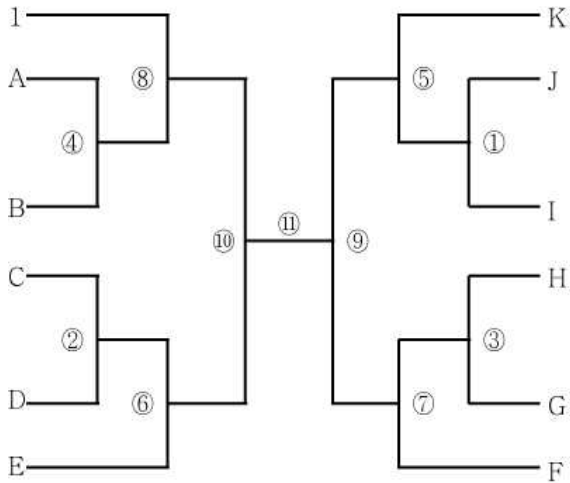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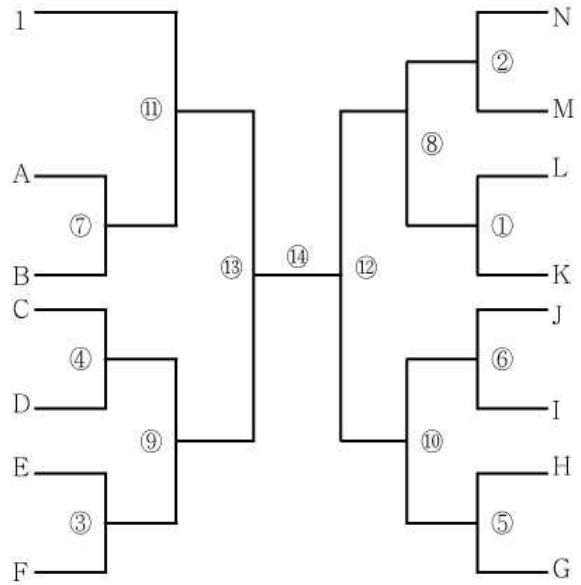
## 토너먼트 경기배정 및 경기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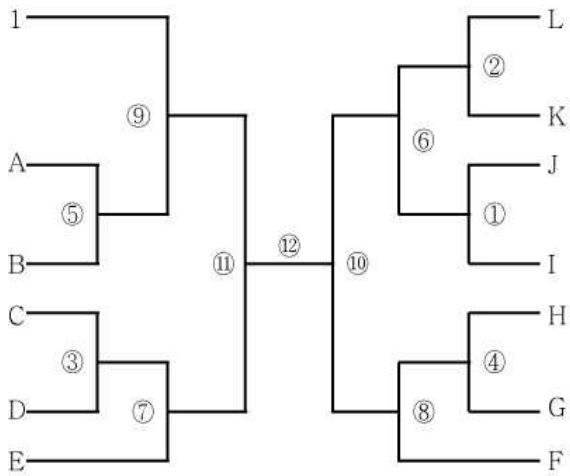
12개 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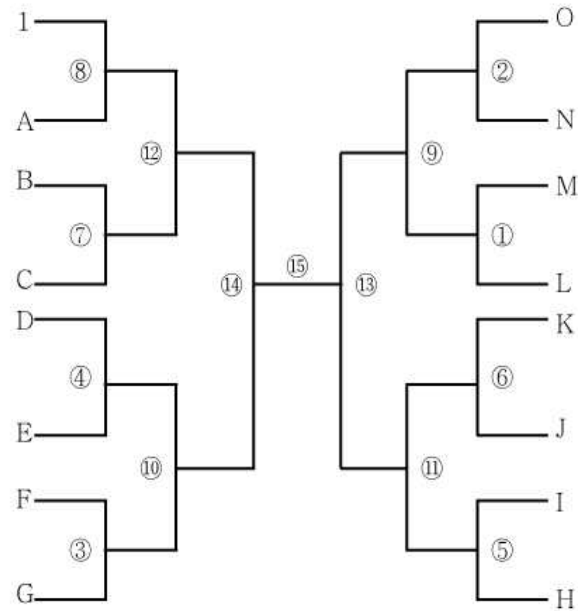
15개 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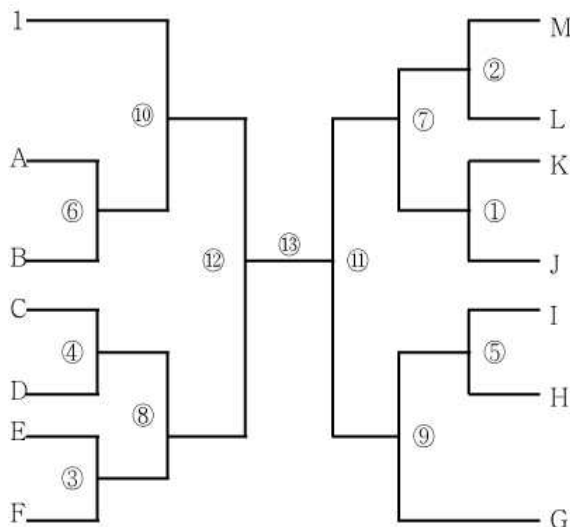
13개 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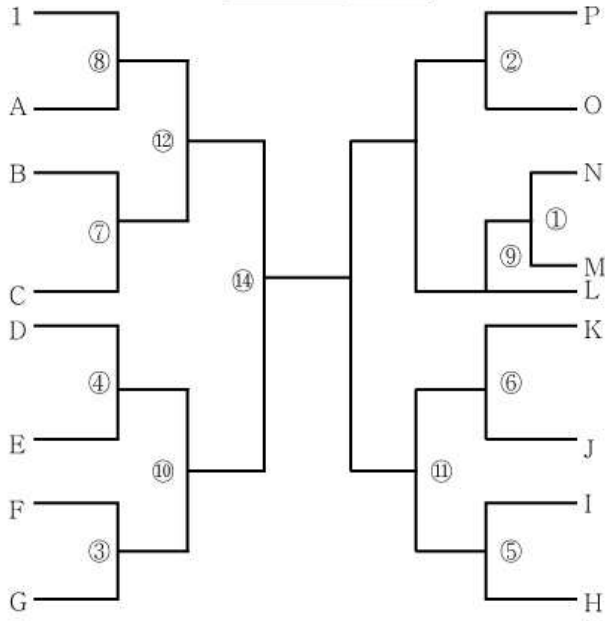
16개 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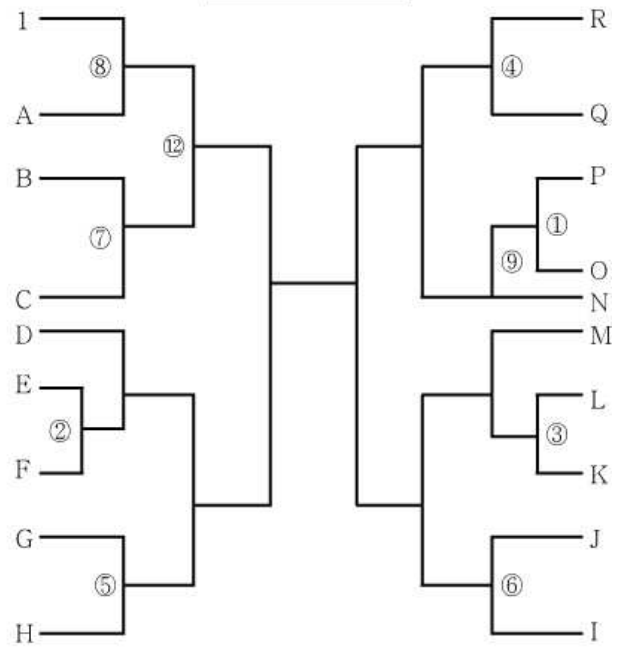
14개 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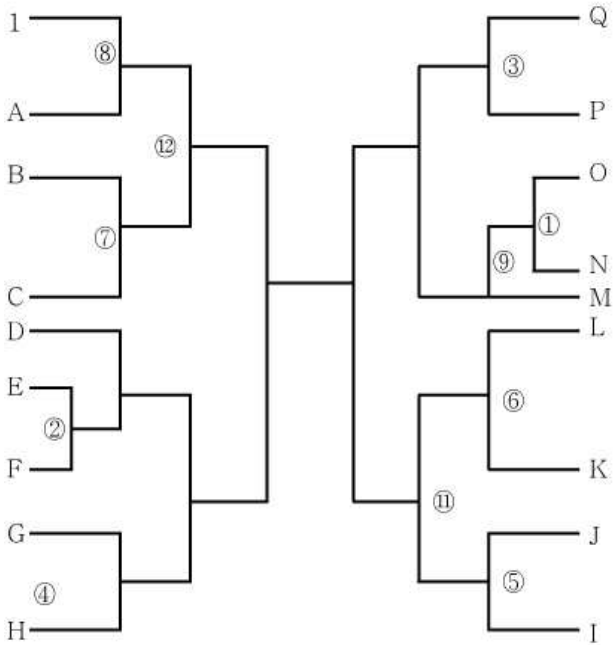
17개 팀 참가



19개 팀 참가



18개 팀 참가



#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채점 내규

제정 2016. 8. 24.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제35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시·군별·부문별·종목별·세부종목별 순위 결정을 위한 채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점구분)**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육대회”라 한다.) 채점은 종합채점, 경기부문채점, 세부종목채점으로 구분한다.

## 제2장 종합채점

**제3조(종합순위 결정)** ① 도민체육대회의 시·군 종합순위는 시·군의 종합점수로 결정한다.  
② 시·군의 종합점수는 경기부문별 종합점수의 합계로 결정한다.

**제4조(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종합순위를 결정할 때 종합점수가 같은 시·군이 있으면 상위입상 경기부문 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결정한다.

## 제3장 경기부문 채점

**제5조(경기부문의 채점)** ① 도민체육대회 시·군의 경기부문 종합점수는 종목별 종합점수로 결정한다.

② 종목별 종합점수는 종목별 순위득점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결정한다.

③ 종목별 순위득점은 참가 시·군의 수에 따라 결정하되, 세부종목 채점합계가 최하위인 시·군을 1점으로 하고 순차로 1점씩 가산한 점수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육상, 수영, 개인종목경기 제외)

- 해당 시·군 종목별 순위득점 × 100 = 해당 시·군 종합득점

④ 육상(학생부·일반부), 수영과 개인종목부문 경기에 참가하여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⑤ 세부종목 채점합계는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육상종목의 채점)** 육상종목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여 2개의 경기부문으로 채점한다.

**제7조(전국체육대회성적 합산)** ①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직전년도 하계전국체육대회 성적을 1개 부문으로 채점하여 합산한다.

② 채점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전국체육대회 획득점수 ÷ 평가종목의 최대치 × 100% = 환산율%

③ 2개 이상의 팀을 육성하는 경우 유리한 종목을 반영 한다.

④ 전국체육대회성적 채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민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역전경주대회성적 합산)** ① 해당연도 3.1절기념 충청남도지사기 시·군역전경주대회의 성적(순위)을 1개 부문으로 채점하여 합산한다.

② 채점방법은 참가 시·군의 수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시·군으로부터 순차적으로 1점씩 감하여 채점하고 종합득점 100%를 인정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개최 시에는 채점에서 제외한다.

**제9조(동순위 배점)** 동순위 시·군이 2 이상일 때에는 해당 동위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10조(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경기부문 순위를 결정할 때 경기부문 점수가 같은 시·군이 있으면 상위입상 세부종목 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결정한다.

**제11조(경기기록 책임자)** ① 경기부문별 채점은 회원종목단체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대회본부(기록부)의 기록을 확인하고 채점하여 기록부장에게 제출한다.

## 제4장 세부종목 채점

**제12조(기록경기 채점)** ① 기록경기의 채점은 세부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궁도, 볼링, 보디빌딩, 역도 제외)

등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개인전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단체전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② 궁도, 볼링 경기종목은 단체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③ 보디빌딩 경기종목은 체급별로 8위까지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④ 역도 경기종목은 합계, 인상, 용상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합 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인상, 용상	3점	2점	1점	-	-	-	-	-

**제13조(토너먼트경기 채점)** ① 토너먼트경기의 종별(체급별) 채점은 다음과 같이 5위까지만 채점한다.

등위 구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개인 또는 단체수	1	1	2	4

② 토너먼트경기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 팀에 배정하되 개최지 팀이 불참, 몰수, 실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동순위 배점)** 세부종목 및 체급별 경기에서 동순위 시·군이 2 이상일 때에는 동위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수로 등분 배점한다.

## 제5장 보칙

**제15조(기권, 몰수, 불출장 채점)** ①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할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②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경기몰수는 해당 회원종목 단체의 사유서를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 제12조의 소청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시행세칙)** ① 도민체육대회 채점에 관하여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른다.



② 기타 도민체육대회 채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민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특별상 내규

제정 2016. 8. 24.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제36조제4호의 특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육대회”라 한다) 규정 제36조 제4호와 같이 시상한다.

③ 도민체육대회 특별상시상은 폐회식에서 실시한다.

**제3조(성취상)** 도민체육대회 규정 제36조 제4호 가목의 성취상은 전년 대비 득점이 많이 향상된 시·군 순으로 결정한다.

**제4조(모범선수단상)** ① 도민체육대회 규정 제36조제4호나목의 모범선수단상은 참가선수단이 경기질서를 유지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시·군에 시상한다.

② 모범선수단상 시상대상 시·군이 종합시상 대상시·군일 경우에는 차순위 시·군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선수단상 시상 대상 시·군 선정을 위하여 특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민체육대회 임원장이 되며, 위원은 도민체육대회 개최종목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과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채점)** ① 모범선수단상 시상 대상은 가장 많은 득점을 획득한 시·군을 선정한다.

② 모범선수단상은 위원이 기록한 채점표에 의하며 기록되지 않은 채점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7조(보칙)**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특별상 시상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민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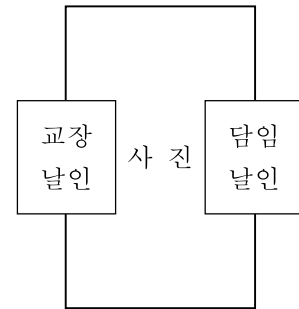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재학증명서 양식)

제 호

# 재 학 증 명 서



주 소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학 적 사 항

일 자	내 용	해 당 학 교
. . .	제 학년 입학	
. . .	제 학년 전입학	
. . .	제 학년 전입학	
. . . 현재	제 학년 재학중	

위와 같이 2017년 월 일 현재 본교 제 학년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확 인	
교 장	
담 임	

2017년 월 일

학교장

(직인)

MEMO